

## Childcare Teachers' Perception of Child Abuse by Parents and Fellow Teachers

Park, Mi-Young (Da-Won Childcare center)  
Kim, Hyun-Ju<sup>1)</sup> (GFCE)

---

---

< ABSTRACT >

---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hildcare teachers' perception of child abuse by parents and fellow teachers.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197 daycare teachers. As a result of the survey, more than two thirds of the childcare teachers were aware that child abuse was occurring by parents and fellow teachers. In addition, there were mean differences in percep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child abuse. Childcare teachers perceived that mental and physical abuse by parents was more frequent than child abuse by fellow teachers. There wer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child abuse by the background variables of childcare teach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various policies and related laws should be prepared to prevent child abuse from parents and childcare teachers, and the necessity of parent education and teacher education is also urgent.

**Key Words:** childcare teachers, child abuse, child abuse perception, mean difference test

---

---

---

1) Corresponding Author: Kim, Hyun-Ju, GFCE, Kwanakcentury Tower # 1414, 1808 Nambusunhwan-Ro, Kwanak-Gu, Seoul, Korea, 06978 / E-mail: dunal111@hanmail.net  
Received: April 05, 2018 / Revised: May 13, 2018 / Accepted: May 22, 2018

## 보육교사가 인식한 부모 및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박미영 (다원 어린이집)  
김현주<sup>1)</sup> (글로벌미래융합교육원)

---

### < 요약 >

---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가 인식한 부모 및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것이다. 부모와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인식은 어떠한지와 그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부모와 동료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7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2/3 이상의 보육교사가 부모와 동료교사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아동학대의 종류에 따라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부모에 의한 정신적, 신체적 학대가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인식하였으며, 변인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보였다.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에서도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부모와 보육교사로부터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및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부모교육과 교사교육의 필요성도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보육교사, 아동학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평균차이검증

---

---

1) 교신저자: 김현주, (08787)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관악센츄리타워 1414호, 글로벌미래융합교육원 / E-mail: dunal111@hanmail.net  
논문투고: 2018. 04. 05 / 심사일자: 2018. 05. 13 / 게재확정일자: 2018. 05. 22

## I. 서론

아동복지와 관련된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이다. 이 법은 6.25 전쟁 이후 사회혼란과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입법되었으며, 1981년 4월 13일에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전문 개정되었다(양명자, 2015). 1981년 개정 아동복지법의 취지는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건전육성에 그 목적을 두었으나 보호체계는 역시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후의 시설수용보호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정 내 아동학대, 약물중독, 아동의 새로운 아동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200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고, 이후 2014년 1월 28일에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의미 있는 법 제정 및 개정으로 가족 내의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국가의 개입을 시도하게 되었다. 학대 받은 아동 또는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목격한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생존권과 관련하여 아동학대는 아이들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발달을 방해하며, 다양한 후유증이나 문제 행동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적 개입이 절실하다. 특히 단순골절이나 타박상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사망, 뇌 손상, 영구적 장애 등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개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현순, 2014). 또한 아동학대의 피해 경험은 아동의 정서 및 인지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어린 시절에 받은 학대의 경험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정체성의 문제,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문제, 우울증, 낮은 학업성취도, 높은 자살충동 등 개인의 성격이나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오현주, 2007). 특히 아동발달의 초기인 유아기에 발생하는 학대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이후의 발달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친다(Perry, 1983).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보육교사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이영애,곽정인, 2013). 현대의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하루 8~24시간 동안 보호와 교육을 받으며 생활하는 곳으로 제2의 가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교육과학기술부, 2012), 보육교사가 영유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직접적이라는 점에서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학대 가능성과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요구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기관, 2011).

그러나 어린이집 내에서의 아동학대 판단 기준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훈육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학대도 많은 상황이다. 어떤 보육교

사들은 ‘교육’이라는 명목아래 영유아의 행동을 제한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거나 일방적인 지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영유아들의 자존감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인 책임 전가하기, 비웃기, 창피주기, 위협하기, 영유아에게 애정적 정서적지지 주지 않기, 교사와의 관계에서 무시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기, 영유아에게 웃어주지 않기, 쉽게 핀잔주기, 필요 이상으로 아이를 비난하기, 따끔하게 야단쳐서 다시는 못하게 해야 해 라는 강압적인 훈육을 고집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교사와 영유아의 관계를 같은 인간으로서 수평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가르침을 당하는 수직적인 관계로 보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동료 보육교사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경험적 연구는 찾기 어렵다.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이 발행한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1년 4,133건에 비해 2013년 신고 건수는 13,076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86.6%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부모에 의한 학대가 83.1%(5,039건)라고 한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가족 내의 문제로 간주하는 강한 인식 때문에 학대아동의 발견은 물론 아동학대의 개입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현순, 2014).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인식은 아동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가져야 할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고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성장과 발달, 그리고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 아동학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Beckeet, 2003). 그래서 학대아동에 대한 신속한 발견과 아동학대 발생 시의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육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될 때 교사들은 아동과 부모에게 직접 개입하거나 아동학대 관련기관에 이를 신고하여 학대받은 아동이나 가해부모에게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Fossum과 Sorensen(1980)은 교사는 아동이 학대받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위험에 처한 아동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Rowe(1981)는 교사는 아동의 행동을 매일매일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가정환경에 대해서도 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학대를 발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지윤, 2000). 즉, 보육교사들은 아동발달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 학대를 발견하는 데 좋은 조건을 갖추

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12시간 종일제로 운영되고 있어 교사들은 영유아들과 지내는 시간이 길어 신체적 학대 및 방임 등 학대를 발견하는데 다른 신고의무자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보육교사들이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학대예방에 기여하는 일이며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조장하는 일이다. 따라서 아동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이 증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이현순, 2014).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5월 20일부터 돌봄 시설 학대근절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사례판정 이후 가해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 취소처분을 받으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취소와 기본보육료, 인건비, 기타 지자체 특수 시책 지원이 최대 9개월간 중단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이처럼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관련 처벌과 법적 조치가 실시되고, 처벌이 점차적으로 강화되며 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하여, 이러한 조치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국내 경험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부모와 보육교사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종사자인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부모 또는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과 인식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가정 및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처 및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 연구문제 1. 부모와 동료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부모와 동료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 연구문제 3.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부모와 동료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동료 보육교사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 K구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총

197부를 회수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조사대상 197명 모두 여성이었으며 연령은 주로 20~30대였다. 학력은 52%가 전문대졸이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는 56%였다. 보육경력 50%이상이 5년 이하였고, 67%가 담임교사를 맡고 있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배경변인	구분	빈도(N)	백분율(%)
연령	20대	65	33.0
	30대	66	33.5
	40대	48	24.4
	50대 이상	18	9.1
결혼여부	미혼	97	49.2
	기혼	100	50.8
자녀유무	있다	89	45.2
	없다	108	54.8
최종학력	고졸	12	6.1
	전문대졸	104	52.8
	대졸	70	35.5
	대학원졸	11	5.6
근무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112	56.9
	민간 보육시설	43	21.8
	가정 보육시설	42	21.3
보육경력	1년 이하	22	11.2
	1~3년 이하	47	23.9
	3~5년 이하	47	23.9
	5~7년 이하	32	16.2
	7~10년 이하	29	14.7
	10년 초과	20	10.2
직위	보조교사	29	14.7
	담임교사	133	67.5
	주임교사	16	8.1
	원장	19	9.6
합계		197	100

한편,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배경변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발견 경험 및 신고 경험과 관련된 내용과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경험은 <표 2>와 같다. 아동학대 발견 경험이 있다는 보육교사는 31명(15.7%), 없다는 보육교사가 166명(84.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학대 발견 경험이 있다는 보육교사 31명 중 신고경험이 있다는 보육교사는 1명(3.2%)으로, 없다는 28명(90.3%)으로 나타나 발견경험이 없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

치였다. 본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보육교사는 2명(6.5%) 으로 나타났다.

<표 2>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경험

질문	내용	N	%
아동학대 발견 경험	있다	31	15.7
	없다	166	84.3
아동학대 발견 경험이 있는 경우 신고 경험	있다	1	3.2
	없다	28	90.3
	무응답	2	6.5

그리고 <표 3>과 같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한 경험이 있는 1명의 신고한 이유는 나의 힘만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신고 경험이 없는 29명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대처 방법으로는 아동에게 관심을 갖고 부모와 상담하였다는 보육교사가 11명(37.9%)으로 가장 많았으며, 혼자 고민하다 포기하였다 9명(31.0%), 아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오고 있다 6명(20.7%), 아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명(1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아동학대 신고 이유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대처 방법

질문	내용	N	%	합계
신고한 이유	나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서	1	100.0	1 (100%)
신고하지 않은 경우 대처 방법	아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10.3	29 (100%)
	혼자 고민하다 포기하였다	9	31.0	
	아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오고 있다	6	20.7	
	아동에게 관심을 갖고 부모와도 상담하였다	11	37.9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 경험이 있다는 보육교사는 183명(92.9%), 없다는 보육교사가 14명(7.1%)으로 나타났다.

&lt;표 4&gt;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험

질문	내용	N	%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험	있다	183	92.9
	없다	14	7.1

그리고 <표 5>와 같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보육교사들의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참석할 기회가 없어서 8명(57.1%), 업무가 너무 바빠서 4명(28.6%), 관심이 없어서 2명(14.3%)으로 나타났다.

&lt;표 5&gt;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질문	내용	N	%	합계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석 못한 이유	참석할 기회가 없어서	8	57.1	14 (100%)
	업무가 너무 바빠서	4	28.6	
	관심이 없어서	2	14.3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으로 각각 사용하였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경험 유무 및 아동학대 관련 교육에 관한 항목은 차은민(2006)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들을 작성하였다.

### 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인식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구성 내용은 <표 6>과 같다. 구체적으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의 Cronbach  $\alpha$ 는 .869로, 신체적 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의 Cronbach  $\alpha$ 는 .819로, 방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의 Cronbach  $\alpha$ 는 .708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  $\alpha$ 는 .893으로 나타나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 인식과 관련된 측정도구의 신뢰도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6>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요인	내 용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alpha$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인식	정서적 학대	5	1~5	.869
	신체적 학대	13	6~18	.819
	방임	4	19~22	.708
전체 문항 (22문항)				.893

### 나.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에 대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구성 내용은 <표 7>과 같다. 구체적으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의 Cronbach  $\alpha$  는 .867로, 신체적 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의 Cronbach  $\alpha$  는 .827로, 방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의 Cronbach  $\alpha$  는 .881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  $\alpha$  는 .876으로 나타나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 인식과 관련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요인	내 용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 $\alpha$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인식	정서적 학대	5	1-5	.867
	신체적 학대	13	6-18	.827
	방임	4	19-22	.881
전체 문항 (22문항)				.876

### 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의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 조사를 위해 2017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시 K구의 국공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를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평균 차이검정으로 두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보육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차이검정으로 두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동료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부모와 동료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연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부모와 동료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해 보육교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먼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는 ‘매우 많이 일어난다’고 응답한 보육교사는 8명(4.1%), ‘자주 일어난다’ 59명(29.9%), ‘보통이다’ 77명(39.1%),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50명(25.4%),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3명(1.5%)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보육교사가 인식하기에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있는 경우가 어느 정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109명(55.3%)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57명(28.9%), ‘자주 일어난다’ 17명(8.6%),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13명(6.6%), ‘매우 많이 일어난다’ 1명(0.5%)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주로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내용으로 들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육교사들은 동료교사에 의한 학대보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더 잦은 빈도로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부모와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 검증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보다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방임에 대한 인식은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보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부모와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

변수	구분	M	SD	t	p
정서적 학대	부모에 의한 학대	4.003	.641	-14.310	.000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	4.526	.514		
신체적 학대	부모에 의한 학대	4.773	.266	-9.988	.000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	4.933	.147		
방임	부모에 의한 학대	4.907	.253	2.402	.017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	4.857	.343		

### 3. 보육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

#### 가. 보육교사 배경 변인에 따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이 보육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두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일원분산분석결과는 <표 9>와 같이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05$ ),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라 신체적 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그리고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신체적 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신체적 학대에 대한 20대 보육교사의 인식이 40대 보육교사의 인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9&gt; 연령에 따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인식 차이

변수	<i>M(SD)</i>				<i>F</i>	<i>p</i>	<i>Scheffe</i>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정서적 학대	4.138 (.594)	4.024 (.655)	3.842 (.642)	3.867 (.683)	2.323	.076	
신체적 학대	4.847 (.171)	4.781 (.254)	4.683 (.354)	4.718 (.260)	3.973	.009	20대>40대
방임	4.942 (.164)	4.909 (.254)	4.875 (.338)	4.861 (.246)	0.878	.453	

둘째, 보육교사의 결혼 여부에 따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두 독립표본 t-test 분석 결과는 <표 10>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부모에 의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에 대한 미혼인 보육교사의 인식이 기혼인 보육교사의 인식 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lt;표 10&gt; 결혼 여부에 따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인식 차이

변수	구분	<i>M</i>	<i>SD</i>	<i>t</i>	<i>p</i>
정서적 학대	미혼	4.122	.596	2.595	.010
	기혼	3.888	.665		
신체적 학대	미혼	4.834	.203	3.248	.001
	기혼	4.714	.306		
방임	미혼	4.923	.212	.838	.403
	기혼	4.893	.287		

셋째, 보육교사의 자녀 유무에 따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두 독립표본 t-test 분석 결과는 <표 1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자녀가 없는 보육교사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자녀가 있는 보육교사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p < .05$ ), 자녀가 없는 보육교사와 자녀가 있는 보육교사의 방임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표 11> 자녀 유무에 따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인식 차이

변수	구분	M	SD	t	p
정서적 학대	자녀 유	3.874	.668	-2.600	.010
	자녀 무	4.109	.601		
신체적 학대	자녀 유	4.698	.311	-3.689	.000
	자녀 무	4.835	.205		
방임	자녀 유	4.879	.302	-1.424	.156
	자녀 무	4.931	.202		

넷째, 보육교사의 학력에 따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1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보육교사의 학력에 따라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05$ ), 보육교사의 학력에 따라 정서적 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그리고 보육교사의 학력에 따른 정서적 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Scheffé)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의 학력 즉,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집단 간의 부모에 의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학력에 따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인식 차이

변수	M(SD)				F	p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정서적 학대	3.800 (.671)	3.906 (.623)	4.143 (.636)	4.255 (.646)	2.961	.033
신체적 학대	4.628 (.420)	4.750 (.253)	4.821 (.255)	4.846 (.198)	2.527	.059
방임	4.958 (.144)	4.885 (.293)	4.929 (.209)	4.932 (.162)	.640	.590

다섯째, 보육교사의 근무시설 유형에 따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일원분산분석결과는 <표 1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보육교사의 근무시설 유형에 따라 방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05$ ), 보육교사의 근무시설 유형에 따라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그리고 보육교사의 근무시설 유형에 따른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Scheffé)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부모에 의한 정서적 학대에 대한 국공립 보육시설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의 인

식이 민간과 가정 보육시설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의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에 의한 신체적 학대에 대한 국공립 보육시설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의 인식이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의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근무시설 유형에 따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인식 차이

변수	M(SD)			F	p	Scheffé
	국공립	민간	가정			
정서적 학대	4.146 (.538)	3.847 (.828)	3.781 (.587)	7.012	.001	국공립> 민간, 가정
신체적 학대	4.826 (.201)	4.698 (.314)	4.711 (.335)	5.267	.006	국공립> 민간
방임	4.917 (.221)	4.895 (.319)	4.893 (.260)	.205	.815	

여섯째, 보육교사의 보육경력에 따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일원분산분석결과는 <표 1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보육교사의 보육경력에 따라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에 보육교사의 인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p>.05$ ), 보육교사의 보육경력에 따라 방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그리고 보육교사의 보육경력에 따른 방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Scheffé)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의 보육경력에 따라 부모에 의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보육경력에 따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인식 차이

변수	M(SD)						F	p
	1년 이하	1~3년	3~5년	5~7년	7~10년	10년 초과		
정서적 학대	4.209 (.567)	4.140 (.621)	3.813 (.619)	3.956 (.702)	3.883 (.577)	4.150 (.702)	2.232	.053
신체적 학대	4.822 (.218)	4.827 (.200)	4.746 (.285)	4.702 (.326)	4.719 (.298)	4.850 (.225)	1.678	.142
방임	4.966 (.117)	4.957 (.141)	4.926 (.201)	4.898 (.253)	4.767 (.443)	4.900 (.249)	2.549	.029

일곱째,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발견경험 여부에 따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독립표본 t-test 분석 결과는 <표 1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발견 경험 여부에 따라 부모에 의한 신체적 학대, 방임에 대한 아

동학대 인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05$ ), 부모에 의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아동학대 발견경험이 없는 보육교사의 인식이 아동학대 발견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 한편, 보육교사의 직위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부모에 의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에 대한 아동학대 인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아동학대 발견경험 여부에 따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인식 차이

변수	구분	<i>M</i>	<i>SD</i>	<i>t</i>	<i>p</i>
정서적 학대	있다	3.794	.694	-1.998	.047
	없다	4.042	.625		
신체적 학대	있다	4.692	.277	-1.851	.066
	없다	4.788	.263		
방임	있다	4.855	.294	-1.264	.208
	없다	4.917	.244		

#### 나. 보육교사 배경 변인에 따른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이 보육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두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근무시설 유형에 따라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16>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보육교사의 근무시설 유형에 따라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05$ ), 보육교사의 근무시설 유형에 따라 정서적 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그리고 보육교사의 근무시설 유형에 따른 정서적 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Scheffé)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정서적 학대에 대한 국공립 보육시설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의 인식이 가정 보육시설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의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의 인식이 가정 보육시설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의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16&gt; 근무시설 유형에 따른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인식 차이

변수	<i>M(SD)</i>			<i>F</i>	<i>p</i>	<i>Scheffé</i>
	국공립	민간	가정			
정서적 학대	4.627 (.478)	4.563 (.535)	4.219 (.473)	10.725	.000	국공립>가정 민간>가정
신체적 학대	4.940 (.125)	4.939 (.155)	4.907 (.188)	.838	.434	
방임	4.819 (.383)	4.953 (.175)	4.857 (.345)	2.421	.092	

둘째, 보육교사의 직위에 따라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17>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보육교사의 직위에 따라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05$ ), 보육교사의 직위에 따라 보육교사에 의한 방임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직위에 따른 방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Scheffé)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에 의한 방임에 대한 보조교사로 활동 중인 보육교사의 인식이 원장으로 활동 중인 보육교사의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17&gt; 직위에 따른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인식 차이

변수	<i>M(SD)</i>				<i>F</i>	<i>p</i>	<i>Scheffé</i>
	보조 교사	담임 교사	주임 교사	원장			
정서적 학대	4.503 (.486)	4.511 (.544)	4.625 (.489)	4.579 (.352)	.317	.813	
신체적 학대	4.950 (.101)	4.922 (.164)	4.976 (.061)	4.947 (.123)	.904	.440	
방임	4.966 (.110)	4.848 (.353)	4.938 (.171)	4.684 (.513)	2.996	.032	보조교사>원장

한편, 보육교사의 연령, 결혼여부, 자녀여부, 학력, 보육경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험 여부, 아동학대 발견경험 여부에 따라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에 대한 아동학대 인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필요성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프로그램 또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8>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모든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프로그램 또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학대아동에게 개입하는 방법이 59명(29.9%)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방법 36명(18.3%),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 32명(16.2%),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하는 방법 29명(14.7%),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신고기관 정보 27명(13.7%), 아동학대 관련된 법 9명(4.6%), 기타 5명(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

질문	내용	N	%
아동학대 예방교육 필요성	있다	197	100.0
	없다	0	0.0
	학대아동에게 개입하는 방법	59	29.9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방법	36	18.3
아동학대 예방교육 필요성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	32	16.2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하는 방법	29	14.7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신고기관 정보	27	13.7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9	4.6
	기타	5	2.5

한편, 아동학대 문제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신고 제도를 활성화기 위한 방안에 대한 보육교사의 생각은 <표 19>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신고자의 비밀보장이라고 응답한 보육교사는 101명(51.3%), 신고 시 즉각적인 개입 78명(39.6%), 신고 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 마련 106명(53.8%),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 65명(33.0%), 아동학대와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 79명(40.1%), 신고의무제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39명(19.8%), 기타 2명(1.0%)으로 조사되었다.

&lt;표 19&gt; 아동학대 문제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내용	N	%
신고자의 비밀보장	101	51.3
신고 시 즉각적인 개입	78	39.6
신고 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 마련	106	53.8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	65	33.0
아동학대와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	79	40.1
신고의무제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39	19.8
기타	2	1.0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해 보육교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개인의 배경변인에 따라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해 2/3 이상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학대의 유형 중에서 특히 방임이 가장 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김지윤(2000)의 연구결과에서 2000년 당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이 56%정도였던 것에 비해 인식 수준이 상당히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학대가 더 잦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후 송준화(2007), 윤혜진(2008)에 의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지만, 김혜옥(2014)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보육교사는 더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였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한편 동료 보육교사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에서는 보육교사는 동료 교사들이 아동을 학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보고하였다. 이는 인식의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현상에 대해 묵인하고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보육교사가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상황을 빠르게 인지해야만 이는 곧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학대아동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고 또 다른 피해아동을 구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답변에서 아동학대 예방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의 필요성 중, 해당 아동 및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한 바, 정책적인 측면에서 아동학대의 피해신고 접수자가 누가 되었든 간에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이러한 제도가 공공연하게 자리 잡아 아동학대 발생 및 피해

사례를 줄이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및 정책 측면의 보완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부모와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차이 검증에서는 보육교사에 의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가 부모에 의한 학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은 부모에 의한 학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점수의 편차에서 그 차이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경우가 잦은 것은 사회적인 문제로 파생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학대아동의 인식에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곧 경험적 측면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인식에서는 보육교사의 연령, 결혼여부, 자녀여부, 학력, 근무시설 유형, 보육경력, 아동학대 발견 경험 여부에 따라 부분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인식에서는 근무시설 유형과 직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에서는 모든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 및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비밀보장 체계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이 부모와 동료 보육교사에 의해 여전히 많은 수가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서도 학대의 종류에 다르게 인식될 수 있으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동학대를 예방 및 학대아동을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필요성에 대해 모든 보육교사들이 깊이 공감하며, 학대아동과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답한 바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사회 전반에서 학대받는 아동을 최우선으로 도우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앞으로 더 발전되고,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정책 및 관련법규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 김지윤 (2000).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혜옥 (2014).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경험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 도미향, 남연희, 이무영, 변미희 (2008). **아동복지론**. 고양: 공동체.
- 문선화, 구차순, 박미정, 김현옥 (2007).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서울: 양서원.
- 문영희 (2010).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 **피해자학대연구**, 18(2), 83-104.
- 문영희 (2011). **아동학대방지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보건복지부 (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2013).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 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2011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송준화 (2007).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아동학대 인식 및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양명자 (2015).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인식이 신고의무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3). **2013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오현주 (2007). **유아교사의 아동학대와 신고 제도에 대한 인식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유홍옥, 유영의, 이진희 (2013). 예비·현직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심각성 및 신고의 효과성,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보육학회**, 13(3), 241-257.
- 윤혜진 (2008).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지역 보육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이영애, 광정인 (2013). 영유아권리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한국콘텐츠학회**, 13(11), 988-1003.
- 이현순 (2014). **어린이집 아동학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정운수, 이정윤 (200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2(3), 227-254.

- 차은민 (200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인제대학교.
- Beckett, C. (2003). *Child protection: An introduction*. London: Sage.
- Fossum, L., & Sorensen, L. (1980). *The schools see it first: Child Abuse/Neglect*. *Phi Delta Kappan*, 62, 43.
- Perry, M. A., Doran, L., & Wells, E. (1983).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a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2(3), 320-324.